

## ■ 의료R&D클러스터 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특	특1~특19	용도 허용	<p>권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관련된 생산시설</li> <li>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&lt;별표7&gt;에서 정하는 건축물로써 대구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</li> </ul> <p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벤처기업집적시설, 소프트웨어진흥시설,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(지원)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</li> <li>• 벤처기업집적시설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)</li> <li>• 소프트웨어진흥시설(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)</li> <li>• 창업보육센터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)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및 100병상이상 병원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0호 교육연구시설(학원과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제외)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(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)</li> <li>• 일반업무시설(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<sup>1)</sup>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)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8호 참고시설</li> <li>• 공장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&lt;별표7&gt; 제2호 사목의 공장)</li> <li>•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, 산·학·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·결정하는 시설<sup>2)</sup></li> <li>•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의료기기 생산 및 연구개발 기관 업종 우선. 단,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한 업종 중 관리 기관과 협의한 업종은 입주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기계 및 장비 (2511 ~ 2513, 2593, 2594, 2599, 2719, 2721, 2732, 2912 ~ 2919, 2921~2926, 2929)</li> <li>-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(2611, 2612, 2632, 2711, 2811, 2812, 2852, 2890, 2927)</li> <li>- 전자부품, 영상, 음향, 및 통신기기(2621, 2622, 2629, 2631, 2642, 2651, 2652, 2830, 2841, 2842)</li> <li>-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,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(2110, 2121 ~ 2123, 2130, 5821, 5822)</li> <li>- 연구개발(7011, 7012, 7212, 7291)</li> </ul> </li> </ul>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 내용
특	특1~특19	용도 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의 단란주점, 러목의 암마시술소, 암마원 및 노래연습장, 거목의 고시원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6호 종교시설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9호 나목 격리병원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1호 노유자시설(근로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2호 수련시설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5호 숙박시설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6호 위락시설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17호 공장 중 염색가공, 피혁, 도료주물, 안료, 염료, 시멘트가공, 농약, 타이어 및 고무제조, 석유화학, 제재업 관련 시설</li> <li>도금, 도장, 폐놀, 및 중금속배출업종,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,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주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<sup>3)</sup>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26호 묘지시설</li> <li>건축법 시행령 &lt;별표1&gt; 제28호 장례식장</li> </ul>

- 1)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「산·학·연 클러스터 구축계획」에 적시된 시설(본사 및 사무소 포함)에 한함
- 2) 「불허용도」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
- 3)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5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허용하며, 또한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의 경우도 허용

\* 의료R&D클러스터용지(특1~특19)는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 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됨.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 내용										
특	특1~특19	형태 및 외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건폐율</td><td>60% 이하</td></tr> <tr> <td>용적률</td><td>400% 이하</td></tr> <tr> <td>높이</td><td>(단,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6구역에 포함된 산·학·연 클러스터부지는 관련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제한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.)</td></tr> <tr> <td>배치 및 건축선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신재생에너지 시스템”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,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</li> <li>건축물의 배치, 건축선의 위치 및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.</li> </ul> </td></tr> <tr> <td>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·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상구조물 차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li>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색채계획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기관(기업)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건축물 색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색채계획 수립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[3].4.라.경관에 관한 계획 중 3)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」 기준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[3].4.라.경관에 관한 계획 중 4)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」 기준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</td></tr> </table>	건폐율	60% 이하	용적률	400% 이하	높이	(단,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6구역에 포함된 산·학·연 클러스터부지는 관련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제한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.)	배치 및 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신재생에너지 시스템”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,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</li> <li>건축물의 배치, 건축선의 위치 및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.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·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상구조물 차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li>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색채계획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기관(기업)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건축물 색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색채계획 수립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[3].4.라.경관에 관한 계획 중 3)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」 기준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[3].4.라.경관에 관한 계획 중 4)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」 기준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
건폐율	60% 이하												
용적률	400% 이하												
높이	(단,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6구역에 포함된 산·학·연 클러스터부지는 관련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제한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.)												
배치 및 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신재생에너지 시스템”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,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</li> <li>건축물의 배치, 건축선의 위치 및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.</li> </ul>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·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상구조물 차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li>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색채계획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기관(기업)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건축물 색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색채계획 수립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[3].4.라.경관에 관한 계획 중 3)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」 기준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[3].4.라.경관에 관한 계획 중 4)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」 기준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